

01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 관련 질의회신

Q01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받은 수입식품등을 비식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수입식품정책과-1491호, '22.3.21.)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처분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치(반출 또는 폐기, 용도전환 등)를 해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비식용 용도전환이 가능함.

- ① 곡류·두류와 같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식물성 원료** 및 **가공식품**(식물성 원료 및 식물성 가공식품(동물성 원료 미 혼합)에 한함) ⇒ **사료로 전환** 허용
- ② 정부·지자체가 **식용 외 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정부·지자체 책임 하***에 용도전환 허용
* 제품사용 기관 : (통관전) 제품 인수계획 / (통관후) 제품인수증 및 사진 제출 (식약처, 관세청)

Q02 A사가 건기 원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제조사에게 위탁생산하여 재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이 가능한지? (수입식품정책과-5657호, '20.11.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해야 함. 또한, 동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마다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동법 제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아래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할 수 있음

-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2)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Q03 수입 축산물을 자사제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 중 시험·검사성적서의 경우,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통해 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수입식품정책과-2134호, '20.5.14.)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1) 식품제조·가공업 등 해당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 2)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3) 시험·검사성적서
-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

상기 서류 중 **시험·검사성적서**는 해당 수입식품의 검사 결과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을 의미하므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하게 발급된 성적서라면 인정 가능함**



04 자사제조용 수입원료를 **일반판매로 용도변경** 신청 가능한지? (수입식품정책과-3581호, '19.7.8.)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함**)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따라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은 **판매용이 아닌 다른 제조·가공업소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며,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용도변경이 불가함



05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한 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OEM 방식으로 자사제품 생산 및 최종 제품의 유통이 가능한지? (수입식품정책과-3244호, '22.6.16.)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임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는,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거나, 2)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

또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가공 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용도변경이 가능함

다만,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 2) 원료를 동일 법인 내에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 4)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함**

따라서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 원료를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사의 상표로 유통·판매되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함 ※ 사실 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

02

보수교육 의무사항 알림



보수교육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며(3시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